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65호 2018. 6. 18(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93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 및 1-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 4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3호선)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5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8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 69

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의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 단독으로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4조제1항 중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를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로, “아니”를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

관”이라 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를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로, “민원업무의”를 “민원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7호) 중 “인·허가”를 “인·허가”로, “정책·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청장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중 “대하여 재산상”을 “재산상”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을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1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금품 등은”을 “금품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품”을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직무관련공무원 으로서 금품 등”을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으로, “그”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로,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오락”을 “오락(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직무관련자 거래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

래하는 행위. 다만, 구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구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을 “외부강의등을”로, “외부강의 등의”를 “외부강의등의”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외부강의 등을”을 “외부강의등을”로, “경우 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8조)제4항 중 “외부강의 등이”를 “외부강의등이”로, “외부강의 등을”을 “외부강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초과하는 사례금”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8항) 중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9항) 중 “외부강의 등은”을 각각 “외부강의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7항”으로,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행동강

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9조로 하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무관련공무원에게”를 “직무관련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 앞에 “제5장 위반 시의 조치”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위반 시의 조치”를 삽입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록 보관·관리) ① 구청장은 제5의2, 제5조의6, 제6조, 제2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 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인”을 “본인”으로, “제시해야”를

“제시하여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품 등을”을 각각 “금품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행동강령책임관”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에”를 “경우에”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 : 금품 등”을 “경우: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 별지 제15호서식”을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을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금품 등을”을 “금품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청·구의·직속기관·사업소·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본청·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로,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1

호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구청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 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직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 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2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성 명	
	직급(위)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 용 부 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93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240(2017. 10.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933호선, 사업명 : 원창동 북항배후부지 중2-933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6.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2-933호선)
 - 명칭 : 원창동 북항배후부지 중2-93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도로	중로	2	933	15	국지도로	124	중로2-5	중로 2-2	일반도 로	-	2017. 10. 16.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번호	행정 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권리 종류	성명	
1	원창동	381-172	잡	9.3	9.3	인천광역시	-	-	
2	원창동	381-169	잡	952.2	952.2	인천광역시	-	-	
3	원창동	381-164	잡	953.1	953.1	인천광역시			
4	원창동	381-167	잡	9.3	9.3	인천광역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도로	중로	2	933	15	국지도로	124	중로2-5	중로2-2	일반도로	-	2017. 10. 16.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69 외 3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6. 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6-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5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69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중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을 언뜻)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51-9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732-1 (백석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2-2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30 (마전동)	20081231	완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9-5, 369-10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31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3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43-1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3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43-2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3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43-3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3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45-1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29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45-2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97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21번길 45-3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3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 14 (마전동)	20081231	검단로6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03-1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32-1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03-11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32-2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3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51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5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24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2, 182-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36-29 (왕길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1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49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32 (석남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1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20-1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29 (마전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83-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25 (가좌동)	20090706	도로가 관통하는 원적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6-18

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9-6	인천광역시 서구 강남로 4 (석남동)	20090922	서구의 4대 재래시장의 하나인 강남시장의 이름을 남기고자 함	
2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57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69-3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2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5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69-5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2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74-10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127-60 (검암동)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2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1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24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2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8-9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7로 17 (오류동)	20121025	보듬로에서 일곱번째 분기되는 도로	
26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6-1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로 53-17 (불로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2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23-19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17번길 7-6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23-2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17번길 9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6-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18번길 19 (경서동)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6-8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45-8 (경서동)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83-42, 183-43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6번길 5-8 (석남동)	20090922	새오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34, 958-3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34 (당하동)	2008123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3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13, 958-1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43 (당하동)	2008123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3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19, 958-2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46 (당하동)	2008123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3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23-10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39번길 4-20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112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6번길 11 (경서동)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26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46번안길 69 (대곡동)	20130730	가현산로46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91-1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18-8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3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8-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9-11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 및 1-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146호(2014.9.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1-1 및 1-2호선, 사업명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6.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사업규모 및 준공예정일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83-1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1-1 및 1-2호선)
 - 명칭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금회		
당초	소로	1	1	10	10	313	249	2,709	
	소로	1	2	10	10	551	551	5,537	
	합 계				10	10	864	800	8,246
변경	소로	1	1	10	10	313	249	2,709	
	소로	1	2	10	10	551	331	3,777	
합 계				10	10	864	580	6,486	감1,76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 초 : 2015. 9. 7. ~ 2017. 12. 31.

○ 변 경 : 2015. 9. 7. ~ 2018. 7.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49	대2-59	광2-4	일반 도로	광2-4	2014.9.22.	
-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31	광2-4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 도로	광2-4	2014.9.22.	

■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소1-1호선]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변경없음	345-7	도	142	24	국	국토교통부				
2	변경없음	346-7	도	2	2	국	국토교통부				
3	변경없음	712-2	도	1	1	국	국토교통부				
4	변경없음	347-10	도	1	1	국	국토교통부				
5	변경없음	347-11	도	216	216	국	국토교통부				
6	변경없음	712-3	도	186	186	국	국토교통부				
7	변경없음	684-53	구	41	41	국	국토교통부				
8	변경없음	684-55	구	101	101	국	국토교통부				
9	변경없음	342-2	도	210	210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0	변경없음	338-14	도	3	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1	변경없음	338-15	도	207	20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2	변경없음	338-17	도	175	175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3	변경없음	338-19	도	249	249	국	기획재정부				
14	변경없음	340-26	대	2	2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5	변경없음	340-27	전	1	1	국	기획재정부				
16	변경없음	346-8	도	146	146	국	국토교통부				
17	변경없음	346-6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8	변경없음	346-10	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19	변경없음	343-4	도	91	91	공	인천광역시 서구				
20	변경없음	337-7	도	162	162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21	변경없음	711-1	도	217	217	국	국토교통부				
22	변경없음	710-1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23	변경없음	338-22	도	345	345	국	국토교통부				
24	변경없음	338-20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25	변경없음	336-20	대	9	9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소1-2호선]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당초	684-52	구	65	65	국	국토교통부				
	변경	-	-	-	-	-	-				
2	당초	487-3	답	3	3	공	인천광역시				
	변경	-	-	-	-	-	-				
3	당초	487-2	답	1	1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4	당초	486-1	전	5	5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5	당초	485-3	대	1	1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6	당초	485-4	전	1	1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7	당초	478-14	도	19	19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8	당초	480-3	대	3	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9	당초	716	도	223	223	국	국토교통부				
	변경	-	-	-	-	-	-				
10	당초	716-4	도	1	1	국	국토교통부				
	변경	-	-	-	-	-	-				
11	당초	716-5	도	187	187	국	국토교통부				
	변경	-	-	-	-	-	-				
12	변경없음	470-16	임	821	821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3	변경없음	470-21	임	229	229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4	변경없음	714	도	316	316	국	국토교통부				
15	변경없음	395-1	대	124	12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6	변경없음	396-1	전	120	120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7	변경없음	684-57	구	125	125	국	국토교통부				
18	변경없음	388-8	전	8	8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19	변경없음	388-7	전	185	185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20	변경없음	388-6	도	4	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21	변경없음	388-5	도	7	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소1-2호선]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2	당초	716-1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변경	-	-	-	-	-	-				
23	당초	456-45	답	1	1	공	인천광역시				
	변경	-	-	-	-	-	-				
24	당초	456-44	전	107	10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25	당초	476-1	전	137	13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26	당초	477-5	전	358	358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27	당초	477-3	전	134	13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28	당초	478-13	전	104	10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29	당초	478-12	대	3	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30	당초	478-15	전	61	61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31	당초	478-16	전	122	122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32	당초	479-4	대	208	208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변경	-	-	-	-	-	-				
33	변경없음	470-17	임	597	59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34	변경없음	470-22	임	144	14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35	변경없음	470-18	임	37	3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36	변경없음	470-20	임	335	335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37	변경없음	470-19	임	17	1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38	변경없음	399-3	대	204	20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39	변경없음	399-4	대	23	2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0	변경없음	397-2	대	146	146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1	변경없음	397-3	대	6	6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2	변경없음	404-21	전	44	4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3	변경없음	404-24	대	4	4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소1-2호선]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4	변경없음	404-23	전	57	5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5	변경없음	404-22	대	22	22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6	변경없음	404-20	도	1	1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7	변경없음	713-6	도	4	4	국	국토교통부				
48	변경없음	684-61	구	1	1	국	국토교통부				
49	변경없음	713-8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50	변경없음	383-14	도	178	178	국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3호선)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2호(2018.1.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소로3-13호선), 사업명: 당하지구 소로3-13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9-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3호선)사업
【명칭】 당하지구 소로3-1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B=4m, L=21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소로	3	13	4	4	21	-	21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김선호 외3인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58, 105동 1801호(부개동, 푸른마을삼부아파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인천 서구 당하동	1089- 10	대	86.9	86.9	김선호	인천 부평 부개로58, 105동1801호 (부개동, 푸른마을삼부아파트)	용진 수산업 협동조합	인천 남구 석바위로3 (도화동)	근저당권	
						유승면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55번길20(상동)				
						김순덕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64, 102동505호(송내동, 부천중동역부동산아파트)				
						이인한	인천 부평 부개로12, 607동2008호 (부개동, 부개주공)				
계				86.9	86.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3	4	국지	21	대2-61	일반 주택지 (당하동 1089-7)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서구고 시제2018-2호 (2018.1.2.)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6.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 변경(문화복지국 가정보육과 → 아동친화정책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친화정책관, 전화 560-4423,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 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 변경(문화복지국 가정보육과 → 아동친화정책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 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부구청장 및 아동친화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제7조 제목 “(동 주민센터 지정위원)”을 “(동 행정복지센터 지정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센터 지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동 주민센터 지정위원은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

-.

② -- 행정복지센터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6.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 변경(문화복지국 가정보육과 → 아동친화정책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아동친화정책관, 전화 560-4422,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 변경(문화복지국 가정보육과 → 아동친화정책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아동업무 담당 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부구청장과 아동친화청
책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아동업무 담당 국장</u>이 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u>아동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u>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1. ~ 4. (생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부구청장</u> ----- -----.</p> <p>③ ----- <u>부구청장과 아동친화청책관</u>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6.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 변경(문화복지국 가정보육과 → 아동친화정책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아동친화정책관, 전화 560-4422,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 변경(문화복지국 가정보육과 → 아동친화정책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아동친화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1조 제목 “(해임·해촉)”을 “(해임·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u>기타</u>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5.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 ----- <u>뜻은</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그 밖에</u> ----- -----.</p> <p>5.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u>의한</u>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u>의하여</u>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p>제4조(사업실행 주체) ----- ----- ----- ----- <u>따라</u> ----- ----- ----- ----- <u>따라</u> ----- -----.</p>
<p>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u>자</u>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p>	<p>제5조(이용의 대상) ----- ----- <u>사람은</u> ----- ----- ----- -----.</p>

1. ~ 4. (생략)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 6. (생략)

④·⑤ (생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아동친화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

<삭 제>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그밖에 -----
-----.

제11조(해임·위촉 해제) -----

위촉을 해제--.

1. ~ 5.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88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명: 도로, 사업명: 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 6.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구 시천동 14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시천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소로	3	2	6	국지도로	107	중로2-135	소로3-1	일반도 로	2005.4.04.	-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기간 : 2016. 8. 29. ~ 2018. 6. 30.